



문서번호 : 21-10-통일위-01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위원장 오민애)
제 목 : [성명] 피해자에 대한 보복기소를 자행한 검사들에 대하여 국회는 탄핵절차를 진행하고 공수처는 철저히 수사하라!
전송일자 : 2021. 10. 26.(화)
전송매수 : 총 2매

[통일위 성명]

피해자에 대한 보복기소를 자행한 검사들에 대하여 국회는 탄핵절차를
진행하고 공수처는 철저히 수사하라!

간첩조작사건 피해자에 대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부처

대법원은 지난 14일 간첩조작사건 피해자인 유우성 씨에 대한 검찰의 외국환거래법위반
공소제기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이탈한 자의적인 공소권행사로 위법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있어 ‘검사가 현재 사건을 기소한 것은 (...) 어떠한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였다. 이른바 ‘유우성 간첩조작사건’에서 국정원과 검찰이 위조된 증거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정원 직원들이 구속되고 담당 검사가 중징계를 받게 되자, 검찰이
유우성 씨에 대해 ‘범죄자’라는 낙인을 찍음과 동시에 자신들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자
과거 기소유예했던 사건을 다시 들춰내어 기소를 했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검찰이 모종의 의도를 가지고 보복기소를 한 것임이 확인된 것이다.

이번 판결은 유우성 개인의 권리를 구제하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 형사사법 역사에 큰 이정표를 세울 의미 있는 판결이다. 과거 항소심 사건에서 공소권남용이 인정되었다가 대법원에서 파기된 사건이 존재했으나 이는 ‘누락기소’를 인정한 판결이었다. 이번 사건은 ‘보복기소’를 공소권남용으로 인정한 첫 사례이자 처음부터 검사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소추재량권을 남용했음을 인정한 교과서적인 사례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은 ① 수사기관의 출입경기록위조사실이 밝혀지자 보수단체의 대표가 유우성을 고발하였고, ② 검찰이 해당 고발을 근거로 수사를 개시했지만, ③ 고발 자체가 검찰의 언론발표를 근거로 한 추측성 보도를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④ 통상의 고발이 고발이후 수 개월이 지나도 고발인조사조차 진행되는 않는 것에 반해, 이 사건의 경우에는 고발직후 수사가 개시되고, 불과 1개월여만에 기소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 사건이야말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발사주의혹’과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의 지시 또는 관여하에 고발이 이루어지고 정해진 수순에 따라 기소가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검찰조직의 사사로운 보복감정으로 진행된 수사와 재판으로 인하여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는 간첩조작사건의 실체가 드러난 이후로도 다시금 수년간의 수사와 재판에 시달리지 않을 수 없었다. 검찰과 법무부는 이 사건의 수사과 기소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감찰을 통하여 그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징계를 통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공수처는 고발-수사-기소로 이어지는 이 사건의 과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범죄 혐의가 없는지 면밀히 수사를 진행하고 국회는 이번 사건에 관여한 검사들에 대하여 탄핵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2021년 10월 2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